

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2 . 10 평창군수(도시경제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 2. 10
- 다. 상정일자 : 제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2.10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경제과장 석명준)

가. 제 안 이 유

- 평창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에 관한 세부사항이 주택공급에 관한규칙(건설부령)에 명시됨으로 조례존치 불필요.

나. 주 요 내 용

-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□ 관련법규를 살펴보면

- 주택공급에관한규칙(건설부령)은 본문 31조, 부칙 16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1998년도 6월 15일 개정 공포된 것임.

□ 평창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를 보면

- 1984년 1월 7일 개정된 것으로서 본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음.
- 주요내용은 입주자의 선정, 모집, 입주금 및 입주보증금, 분양, 임대관리, 입주자의 행위제한, 계약, 손해배상처리로 구성되어 있음.

□ 종합검토

- 평창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는 1984년 1월 7일 개정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.
- 1998년 6월 15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군조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, 더 세분화되어 있어 군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짐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부 . 끝 .